



제 429국회 (정기회)
제 10차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 설치〉

■ 박정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672호)

2025.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정하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9. 3.
3. 회 부 일 : 2025. 9.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기업이나 기관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유출·도난 등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과징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며, 실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는 보상받기 위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함.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의 미흡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나, 피해자는 시간·비용 부담으로 인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움. 이로 인해 피해는 국민이 입고, 과징금은 정부가 가져가는 구조적 비대칭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여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보호 및 지원에 기금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6부터 제39조의22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함)에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려는 것임.
- 구체적으로 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및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과된 과징금 징수액의 100분의 30 등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된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으로 규정함(안 제39조의16 신설 등).
- 또한 보호위원회가 기금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상금의 범위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규정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은 정보주체에 대하여는 지급 한도 내에서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키려는 것임(안 제39조의17 및 제39조의2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9조의16(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의 설치 등) ① 정부는 개인정보의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제3항에 따른 과징금 수납액
3. 구상권 행사에 따른 변제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정부는 제64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과징금의 직전 회계연도 징수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개인정보의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된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금 지급
2. 기금의 조성 ·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 설>

<신 설>

사업

⑤ 보호위원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금 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의17(구상권)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에게 제39조의16제4항제1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범위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상권 청구시기, 근거 및 청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18(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보호위원회가 관리·운용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신 설>

따라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④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보호위원회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⑤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19(기금의 회계기관) ① 보호위원회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39조의18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신 설>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제39조의20(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 결과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제39조의21(차입금) ① 기금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기금에서 지급할 현금이 부족
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일시차입
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그 회계연도 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신 설>

제39조의22(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된 정보주체가 이 법에 따라 보호위원회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한도에서 소멸된다.

□ 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로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3%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

[2020년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 현황]

(단위: 건, 백만원)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9.말
건수	3	21	17	55	36	28
액수	6,775	8,248	101,833	23,206	61,197	165,857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근 주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 현황]

일시	기업명	위반행위	부과액수
2024. 5. 22.	카카오	舊 보호법 §29, §39의4①	15,141백만원
2025. 1. 22.	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Limited	보호법 §26②, §28의8①	2,405백만원
2025. 5. 14.	Whaleco Technology Ltd.	보호법 §28의8①, §26②④, §34의2①, §38④, §63①	879백만원
	Elementary Innovation Pte. Ltd.	보호법 §24의2①	490백만원
2025. 7. 24.	Alibaba.com Singapore E-Commerce Private Limited	보호법 §28의8①, §28의8④, §31의2①, §38④	1,978백만원
2025. 8. 27.	SKT	보호법 §29, §31①③, §34①	134,791백만원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9.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 다만,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9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고서도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 손해배상제도²⁾를 마련하고 있음³⁾.

○ 또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소송 절차의 단점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소송 외 분쟁해결수단인 분쟁조정절차를 두고 있는

-
- 2) 법정 손해배상제도란 피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피해자가 직접 복잡한 손해액 산정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법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여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제도임.
-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7.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주체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바4), 이는 민사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
할 수 있고 정보주체의 입증책임이 완화된다는 장점이 존재함.

-
- 4)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설치 및 구성) 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43조(조정 신청 등) 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 제47조(분쟁의 조정)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1.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④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제3항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49조(집단분쟁조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제4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정보주체 중 일부의 정보주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정보주체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⑦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해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한 점, 분쟁조정 절차 진행 중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해당 절차가 중지되는 점 등 한계 역시 존재함⁵⁾.

□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으나 이로 인한 정보주체 피해의 구제 및 원상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 소관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과·징수된 과징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및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해당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된 정보주체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의 설치는 위법행위를 한 개인정보처리자

5) 「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의 부담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직접적인 재원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소송부담을 완화하고 피해보상 절차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피해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보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 참고로, **보호위원회**는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과징금과 연계된 피해구제 기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다만, 개정안에 따른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의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안전조치 미이행 등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가해자인 개인정보처리자가 배상하는 것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대원칙인데⁶⁾ 정부가 기금을 활용하여 피해자인 정보주체에게 대신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존재함.

- 특히 기금의 재원에는 과징금 징수액뿐만 아니라 정부출연금 역시 포함되어 있는바,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일반 국민이 일부 부담하게 되는 구조가 되어 조세정의 및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도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정

6)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가 직접 구제할 경우 가해기업의 책임 회피 및 도덕적 해이가 유발될 우려가 있고,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개인정보 유출 기업이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부의 직접 손해배상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음.

□ 둘째,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된 자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민사상 손해 사실을 입증하고 이와 관련된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중국적으로 판단하는 주체는 법원인바, 통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법원의 판단을 기초로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음.

○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은 복잡한 증거 수집 및 감정 절차, 다수의 심급제로 인하여 확정판결까지 통상 수년이 소요되고, 과징금 부과처분 역시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과징금 부과처분이 중국적으로 확정되기 위하여는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 있음⁷⁾.

○ 한편 법원의 중국적 판단과 별개로 행정관청(보호위원회)이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전제로 손해 사실 및 규모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보상금을 선지급하는 방안⁸⁾도 고려할 수 있겠으

7) 특히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항소 등 추가적인 불복절차 역시 진행될 수 있음. 또한 행정소송 절차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수도 있음.

8) 구체적인 지원금 산출근거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피해기업의 입

나, 만일 법원의 판단이 행정관청의 판단과 상충될 경우 이미 지급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는 등 당사자 입장에서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이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셋째,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신설 시 △재원과 목적사업 간 연계성 △신축적 사업추진의 필요성 △중·장기적 안정적인 재원조달 가능성 △기존 회계·기금을 통한 추진보다 신설 기금을 통한 사업 추진이 더 효과적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⁹⁾, 개인정보

증부담을 완화하고 손해배상청구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반자가 위반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국가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지급하는 “구조금”의 산출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6(손해액의 추정 등) ②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사업자 또는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제3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기술유용피해사업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구조금액) ①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신체에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를 말한다)의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유족의 수와 연령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와 부양가족의 수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9)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이 제2항의 규정

피해보상기금의 경우 별도 기금 신설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기금의 주요 재원은 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수납액인데, 해당 과징금 징수·수납액은 기업 등의 유출 사고 발생 추이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매년 그 수납액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유출 피해 발생에 따른 보상금 규모 역시 피해 범위 등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서 해당 재원이 매년도 안정적인 재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최근 4년간 보호위원회 과징금 세입예산 및 징수 현황]

(단위: 억원)

연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2025	388	489	455	117.2	93.1	33	0.4
2024	388	538	298	76.7	55.3	241	-
2023	22	1,226	1,209	5,487.3	98.7	16	-
2022	16	1,026	15	96.7	1.5	1,011	-

- 또한 현재 보호위원회 일반회계 내 ‘개인정보침해방지’ 사업¹⁰⁾에서 개인정보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는 등 기존에 정보주체의 피해방지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 존재하므로 기 추진 중인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10)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총 87억 8,200만원 편성, 2026년도 정부제출 예산안 총 72억 6,500만원 반영

○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과징금의 높은 변동성을 고려할 때 기금 신설 요건 중 중·장기적 안정적 재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미 일반회계 내 정보주체의 권리구제 및 분쟁조정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기금 신설을 통한 사업 추진이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 설치 관련 내용은 기금 신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음.

○ 또한 보호위원회는 기금의 재원을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외 다른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까지 확대하고, 기금의 활용 범위를 직접적인 피해 보상금 지급 외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음.

□ 마지막으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위원회 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 시에는 동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자율배상 등 구제조치와의 관계, 중복배상 문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08